

# 2024년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사업 안내

## ○ 지원대상 기업

- ① (일반기업) "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" ("기준 피보험자 수")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
- ② (특례기업)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 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
\* 지원제외: 소비·향락업, 국가 및 공공기관, 재정지원기관, 간접고용(인력공급업·경비경호업·사업시설관리업 등),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, 부정수급 처분으로 지급제한 중인 기업,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지원제외

## ○ 지원 내용

- ① (지원수준)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60만원\*12개월, 2년 근속 시 480만원  
\*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이내 퇴사시 일체 지원불가, 6개월 이후 자진퇴사시 월할계산 지원
- ② (지원한도)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까지 채용 가능

## ○ 지원대상 청년(만15-34세) \* 군필자: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(최대 만39세까지)

- ①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(연속)인 청년

<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>

- ② 고졸 이하 학력,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,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,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⑥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, ⑦ 북한 이탈청년, ⑧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,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,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

## ○ 지원 요건

- ① (고용형태) '24.1.1.~'24.12.31.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(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만 허용) 또는 '24.1.1.~'24.12.31. 기간제(계약직)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
- ② (근로조건 등) 기간의 정함이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 30 이상,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
- ③ (고용조정 이직)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해당 청년 포함한 전직원 대상 고용조정 이직(인위적 감원)이 없어야 함
- ④ (매출액) 기준 피보험자 수 1인당 매출 1,800만원 이상(업력 1년 이상 기업)

## ○ 지원 절차



\* 참여신청: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[고용24누리집 접속→기업회원 로그인→기업지원금(신규 채용)→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→지역구분 검색→기업 소재지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]

\*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먼저 채용(정규직, 기간제)한 경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해야 함

## ○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운영기관에 문의 바랍니다.

(주)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	(주)유니에스서부센터	(주)잡모아 서부지점	워크트랜드주식회사
02-2038-7979(내선2)	02-6011-1326	02-334-8380	02-6091-0072